

## 그 청년의 '억울'한 사연

구울화  
접수상담팀장  
변호사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해 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계속해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미용업계의 신문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의 전과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여성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팀을 찾은 A씨는 매우 열띤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보도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제의 여성 수강생과 A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했으며 결코 성폭행 한 사실도 없었던, A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의 부모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재판과정에서 A씨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의 요지였다.

분명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A씨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 역시 진실하지 못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로 이를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다.

법이 허용한 상소, 재심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든 판결을 번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 제도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 단체 또는 언론도 법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이 판결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 또는 승·패소의 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보도에 의해 재판결과가 바뀌게 되고 결국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도 판결문의 내용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2항은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5호로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어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A씨가 수강생을 성폭행 한 전과가 있다는 보도는 법원의 판결, 그 중에서도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A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5호에 저촉되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동안 A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정말로 그가 성폭행 한 사실이 없고 수강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라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또한 상담 신청인의 말을 최대한 믿고 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상담팀 직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억울함은 언론중재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미진함에 가득찬 채 낙심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상담실을 나서던 A씨의 뒷모습이 마음에 남는다.